

교무위원회 규정

- 제정 : 1978. 3. 1. □ 개정 : 1999. 10. 1.
- 개정 : 1997. 3. 1. □ 개정 : 2006. 3. 1.
- 폐기 : 1999. 9. 3. □ 개정 : 2013. 7. 12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48조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교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교무위원회는 총장, 각 행정처·실장으로 하고, 그 외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위촉하는 자로 구성할 수 있다.

제3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. 총장은 회의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통리한다.

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 대리자가 업무를 수행한다.

제4조(회의소집) 교무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.

제5조(심의사항) 교무위원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
2. 교육목표 추진 정책에 관한 사항
3. 입학, 졸업, 진급에 관한 사항
4. 시험 및 사정에 관한 사항
5.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
6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6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 교무위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간사) 교무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교·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3-0-3 교무위원회 규정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9월 30일 폐기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.